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21일,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4.)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 상정, 소위심
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가.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 육성과 전통주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 소비진작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①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는 쌀 외에도 머루, 포도, 복분자, 밀 등 다양한 농산물로 제조하므로, 쌀에 국한된 소비 촉진의 명문화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문구를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등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전통주 등 제조업자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내산 쌀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임을 지원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조건을 갖추고 특히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통주 등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전통주 등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위반에 대한 분쟁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산 쌀이라는 문구를 제외하는 방안, 전통주 등을 전통주로 수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